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국민 소득수준 증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질병양상이 선진국 수준의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예방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수요가 증가함
- 기존의 상의하달식 일률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중장기로 수립하여 임기응변식의 보건행정이 아닌 계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
-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2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 수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진단 결과를 고려한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세부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둠
-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 ~ 2006년(4년 간)의 중기의료계획임

2. 주요골자

- 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 나. 지역현황과 전망
 - (1) 지역 개황도
 - (2) 지역사회 진단
 - (3) 보건기관 조직진단
 - (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 (5) 지역현황의 요약
- 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 (1) 핵심사업 선정
 - (2) 핵심사업 계획
 - (3) 일반사업 계획
- 라.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 바. 첨부서류

3. 검토의견

이번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 ~ 2006년까지 4년 간의 중기의료계획으로서 제2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역진단 결과를 고려한 핵심사업을 선정하

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의 세부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둔 안입니다.

먼저 법률적 요건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번에 제출한 안에는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규정을 충족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특징으로서는 기존의 제1,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생의 주기별로 보건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하다보니 사업의 우선순위 없이 모든 사업을 나열식으로 기술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전국 모든 보건소가 비슷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목표 설정으로 사업평가를 가능케 하고, 각 사업별 담당자가 계획작성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의 요구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에 따른 평가방안을 제시한 안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선정의 원칙에 따르기보다는 예산, 보건사업 인력,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 민간기관과의 연계가능성, 주민의 의견 그리고 국가정책 등 사업수행의 결정요인을 감안하여, 보건소의 지속적인 기본사업(진료사업, 전염병관리, 의약물관리 등)을 제외하고 주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중 비중을 두고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의료장비의 노후로 인하여 이러한 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라 인력보완과 장비교체 및 보수를 위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유연성 있는 팀의 운영으로 조직에 탄력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과 연계를 통하여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정기적인 연찬 및 연구활성화에 주력하고, part time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보강과 기존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주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